

국내대학간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

□ 제정 : 1997. 03. 01

제1조(목적) 이규정은 학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점교류대상학교) 본교와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대학으로 한다.

제3조(학점교류의 이수범위) 학점교류의 이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기중 또는 방학중에 개설되어 있는 전체과목으로 하되 전공필수과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이수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하되 졸업시까지 21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예.체능계열은 동일계열만 이수할 수 있다.
4. 야간학과 학생은 타대학의 야간학과(부)에만 이수할 수 있다.

제4조(자격) 학점교류 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당해 학기에 본교에 등록된 학생
2. 본교에서 1년이상 수료한 학생
3. 학칙에 의해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자

제5조(추천 및 결정) 교류를 하고자하는 학생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도교수에게 신청하고 학과(부)장, 학장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의무) 교류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취득인정학점) 학점교류 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학과(부)와 학장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 학적과에서는 이를 학적부에 수록한다.

제8조(교류학생의 지도 및 관리) ① 교류학생의 학생지도 및 관리는 본 대학과 교류대학의 긴밀한 협조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한다.

- ② 교류학생에 대해서는 본교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업과 복지시설 이용을 허락한다.

제9조(수강료) ① 계절학기 수강료는 교류대학에서 결정한 금액을 본인이 납부하고 수강한다.

- ② 일반학기의 수강료는 본교와 교류대학과의 협정에 의해 결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규정은 1997학년도 하계계절학기부터 시행한다.